

#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3228
------	------

2022. 6. 15.

기획경제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5월 25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5월 27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2. 6. 15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황보연 경제정책실장)

##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「서울창업센터 관악」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.

- 나.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현 위탁시설 개요

시 설 명	서울창업센터 관악
소 재 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(봉천동 1662-7)
시설규모	대지 327.4㎡, 건물 993.86㎡(1동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, 공유공간, 회의공간 등)

### 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
- 위탁기간 : 2년 4개월(2022.9.1.~2024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548백만원(2022년 예산)

### 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

## 사무의 기준)

-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### ○ 추진경위

- 2019. 9. :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20. 6. :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협약체결
- 2022. 5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재위탁 조건부 동의)
- 2022. 5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
### 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관악에 집적된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,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,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.
- 2022년 관악구 낙성대동 등 8개 행정동이 “관악S밸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”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학의 캠퍼스타운, 시·자치구 창업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음.
- 이에 산학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, 신성장동력 기업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## 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### ○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
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- 산업간 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기획, 관리, 홍보 등
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
-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
  - 우수대학(서울대, 중앙대, 숭실대 등)이 입지한 지역특성 활용 창업 활성화 방안
  - 창업공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, 민간 VC 투자유치, 인근 창업 지원센터 연계방안
- 서울창업센터 관악의 관리 및 운영 전반
  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  - 청소,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“위탁자“와 “수탁자“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22.5.12. 개최)심의 결과 : 적정(조건이행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**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**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창업활동 지원시설인 ‘서울창업센터 관악’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(2022.8.31.)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<sup>1)</sup>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
#### 나. 서울창업센터 관악 개요

-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AI(인공지능), 빅데이터, 융복합기술 등 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시설인 ‘서울창업센터 관악’ (이하 “관악센터”)을 조성해 2020년 7월부터 한국능률협회에 위탁운영 중에 있음.
- 관악센터는 창업 7년 미만의 신성장 동력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, 엑셀러레이팅, 멘토링·컨설팅,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, 입주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음.

#### < 서울창업센터 관악 시설현황 >

- 위치 : 관악구 봉천로 545(봉천동 1662-7)
- 규모 : 연면적 993.86㎡(지하1층~지상5층),  
대지 327.4㎡  
※ 신축('98.), 리모델링('20.)
- 구성 : 보육공간(15개실), 공유오피스, 회의실,  
관리사무실, 지상주차장 등



1)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조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의회 동의 경과기간 (6년)에 상관없이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
- 관악센터 인근 8개동(낙성대동·인현동·행운동·대학동 등) 0.67km<sup>2</sup>가 2022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‘관악S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’로 지정되면서 인근 대학과 연구소,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지원 시설과의 유기적 연계와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높아졌음.
- 입주사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34억 3천 1백만원으로 목표 대비 57%에 그쳤으나, 93억 7백만원(달성률 186%)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비교적 단기간(1년이내)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< 서울창업센터 관악 주요성과 >

(단위: 백만원, 명, 건)

구 분	매출액	투자유치	일자리창출	지식재산권	해외진출
목 표	6,000	5,000	-	-	-
실 적	3,431	9,307	89	36	4
달 성 률	57%	186%			

※ 2021.12.31.기준

#### 다.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

- 서울시는 관악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.
- 관악센터는 스타트업 기업 육성·관리부터 창업시설 간 네트워킹, 인근 서울대·중앙대·숭실대와의 창업 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, 4차 산업혁명과 창업생태계에 대한 경험과

전문인력, 창의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의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음.

- 현재 관악센터 수탁기관인 한국능률협회는 센터 최초 개관 시기(2021년)부터 운영을 맡아 업무체계를 마련하였고, SKT-서울대 등과 민·관·학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, 입주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 등 성과를 창출함.
- 그러나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근로여건 및 노동안정 노력 부진, 협약사항 위반, 필수교육 미이수 등으로 낮은 점수(75.11점<sup>2</sup>)를 받아 관악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에서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이 결정됨.
  - 민간위탁 협약상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(25% 이상<sup>3</sup>)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당시 관악센터 수행인력 4명 모두 비정규직이었음.
  - 기관 신규 채용공고를 서울시 홈페이지, 서울일자리포털, 민간취업포털 등 2곳 이상 게시했어야 하나 미공시했으며, 필수교육인 인권·청렴 교육 등을 미이수함.

---

2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2021.10.)」에 따르면,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은 민간위탁 재계약 불가함.

3) 「민간위탁 위·수탁 표준협약서(시설형)」 제9조 제7항에 따르면,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 정규직 비율을 25%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,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.



-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약내용의 준수, 필수사항의 이행 등 기본적인 약정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엄격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- 또한, 민간위탁 종료시한(8월 말)을 앞두고 촉박하게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나 부결이 될 경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적기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6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창업센터 관악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관악에 집적된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2020년 7월부터 「서울창업센터 관악」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·사업화,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,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서울창업센터 관악
소재지	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5(봉천동 1662-7)
시설규모	대지 327.4㎡, 건물 993.86㎡(1동)
시설용도	창업지원시설(입주공간, 공유공간, 회의공간 등)

## 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
- 위탁기간 : 2년 4개월(2022.9.1.~2024.12.31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548백만원('22년 예산)

## 다.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
### ○ 추진경위

- 2019. 9. : 제289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
- 2020. 6. :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민간위탁 협약체결
- 2022. 5. :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·의결(재위탁 조건부 동의)
- 2022. 5. :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

### ○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창업센터 관악은 관악에 집적된 인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, 민간 VC 활용 투자유치 연계,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해 왔음

- 2022년 관악구 낙성대동 등 8개 행정동이 “관악S밸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”로 지정되는 등 인근 대학의 캠퍼스타운, 시·자치구 창업지원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졌음
- 이에 산학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, 신성장동력 기업 육성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#### 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울창업센터관악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
  - 입주기업 심사·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
  -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 - 산업간 융합 등 신성장동력 분야 창업지원을 위한 기획, 관리, 홍보 등
  - 졸업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
-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립
  - 우수대학(서울대, 중앙대, 숭실대 등)이 입지한 지역특성 활용 창업활성화 방안
  - 창업공간 및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, 민간 VC 투자유치, 인근 창업지원센터 연계방안
- 서울창업센터관악의 관리 및 운영 전반
  - 안전대책 수립,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
  - 청소,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(안전점검, 보안관리 등)
- 기타 위·수탁사무와 관련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한 사항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'22.5.12. 개최)심의 결과 : **적정**(조건이행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##### ○ 「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」

**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**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창업정책과 남부권창업팀 고중석 (☎ 2133-4876)

김유림 (☎ 2133-4879)